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6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11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감사담당관 김동연)

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이 주민 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감사청구가 가능한 주민기준 변경(안 제2조)

-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‘200명 이상’ 에서 ‘150명 이상’ 으로 변경

나. 그 밖에 불필요한 약칭 삭제 등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1조(주민감사청구) 및 제28조(조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1.18. ~ 2023.2.7.) 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가. 개정 취지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감사청구인 요건 완화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‘주민감사청구 제도’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2조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‘200인 이상’에서 ‘150인 이상’으로 개정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주민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
-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 침해 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기존 ‘200명 이상’에서 ‘150명 이상’으로 하향하고 기타 불필요한 약칭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,
-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「지방자치법」 (2021. 1. 12. 개정, 2022. 1. 13. 시행)

제21조(주민의 감사 청구)

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18세 이상의 주민”이라 한다)은 시·도는 300명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영주(永住)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제28조(조례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